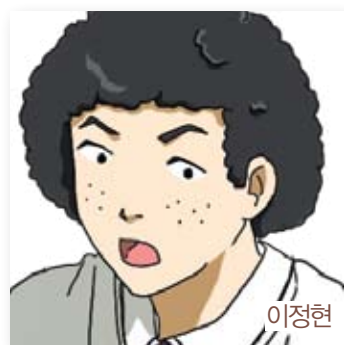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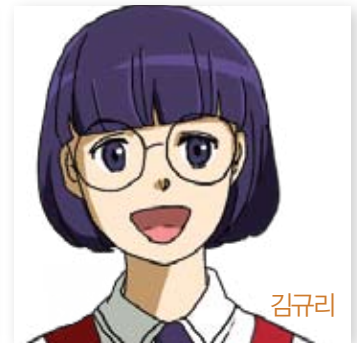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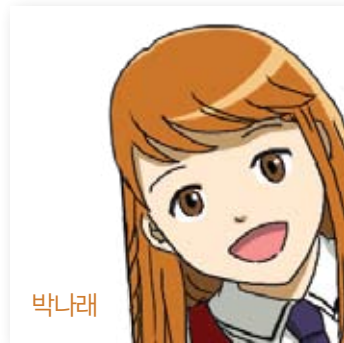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등장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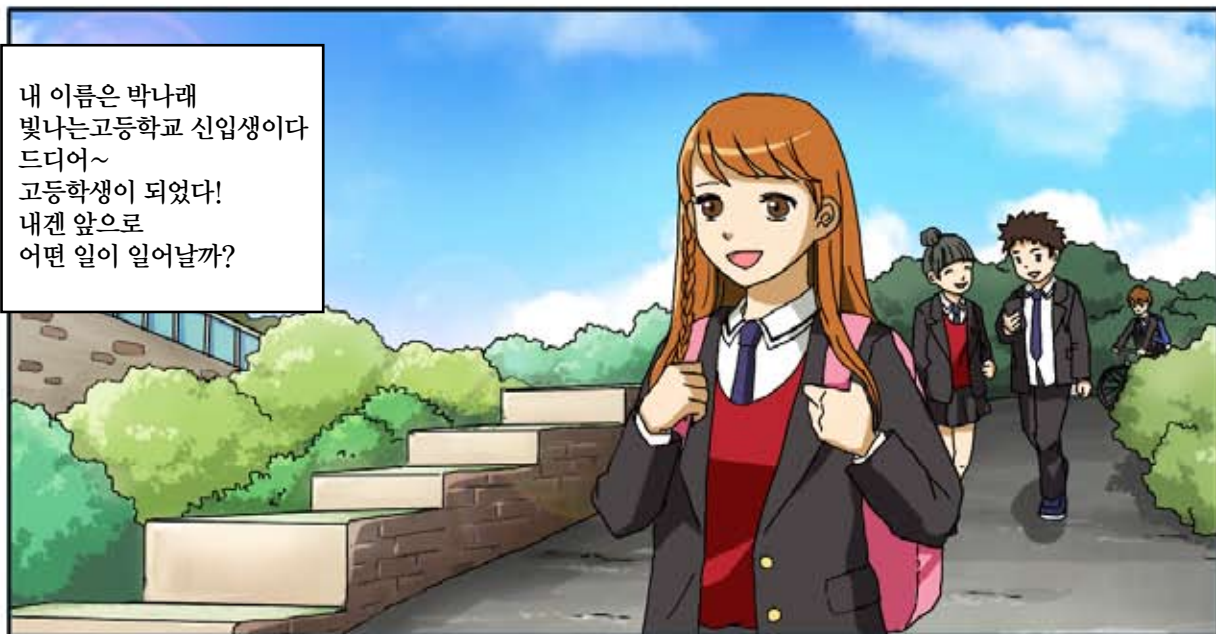
Contents

○ 프롤로그·06

01	나래의 꿈	11
	★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 보장	
02	선생님, 우리 친구해요	21
	★ 소통과 참여의 학교운영 실현	
03	정현이의 봄	31
	★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	
04	우리에게도 사생활이 있거든요	41
	★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05	규리, 학생자치의 의미를 깨닫다	51
	★ 학생자치활동 보장	
06	인권, 넌 뭐니?	61
	★ 인권교육 활성화	
07	우리의 권리는 소중한	71
	★ 인권지킴이	

○ 에필로그·82

내 이름은 박나래
빛나는고등학교 신입생이다
드디어~
고등학생이 되었다!
내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래야~!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인
최용수! 나와 의 인연은
정글정글하다~ 풋!
초등학교, 중학교를 넘어
이젠 고등학교까지~
용수는 입학 첫날부터
또 늦잠이다!



넌 첫날부터
또 늦잠이니?

허억~
헉!

말도 마~
알람시계가
고장났지 뭐야~!

짜잔~!

내가 드디어
고.등.학.생이란
말이지~~ 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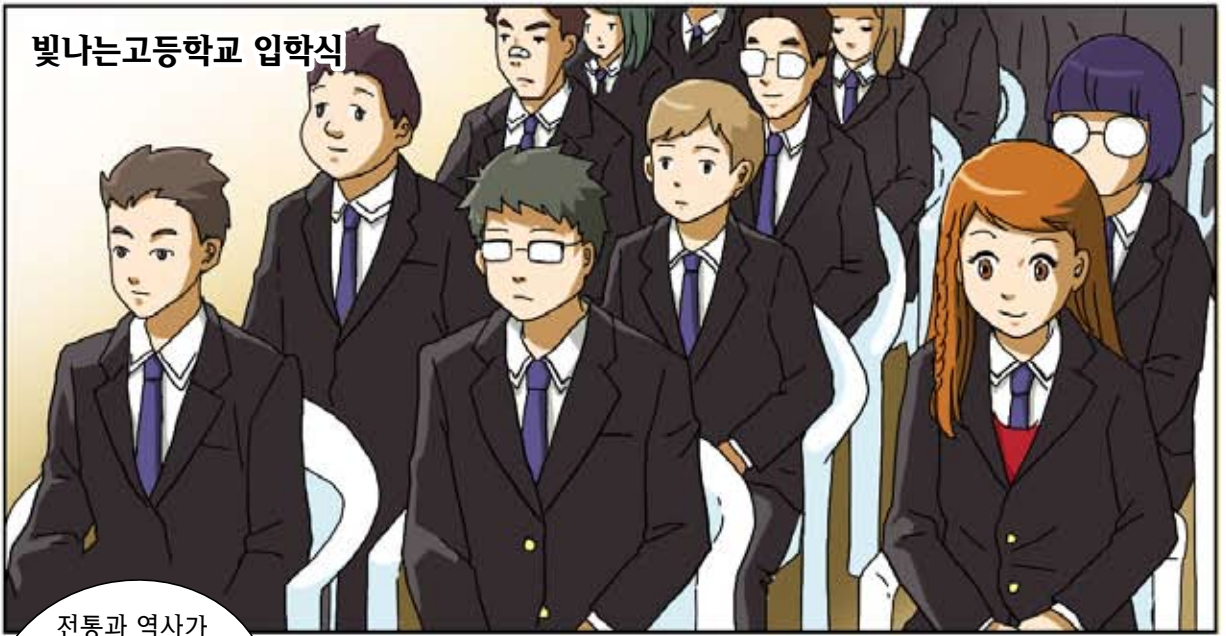


너무 설레서 한숨도
못 잤어~





빛나는고등학교 입학식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우리 빛나는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행복한 학교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학교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서로 존중하는 힘을 길렀으면
합니다. 앞으로 멋진 학교생활
보내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은 언제 들어도
지루해~

아~함~!!

윤수야~
선생님
보고 계셔!



거기~!
신입생, 나 좀 보자

여기가
우리
교실인가?

썩네꼼!

드디어~
고등학교 생활
시작이구나~!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은데...

웅성웅성~

이야~
애들 참~~
개성 있게
생겼다~ 푸히!

저마다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다.

최용수

박나래

이정현

김규리

고승현

이렇게 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시작되었다.
앞으로 어떤 학교 생활이 펼쳐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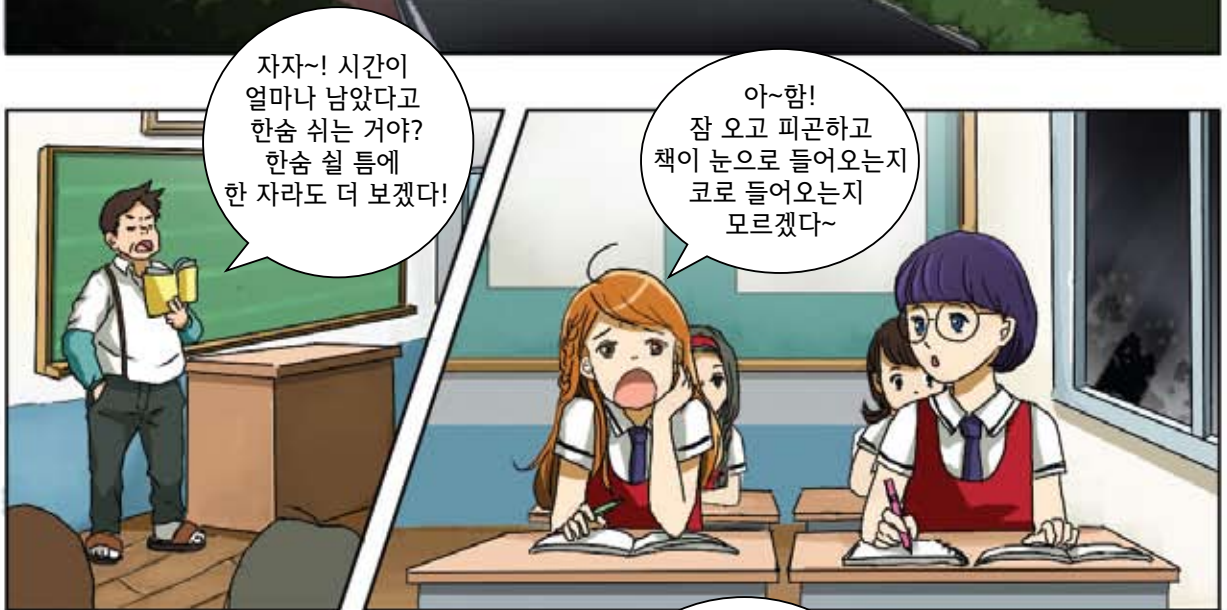


나래의 꿈

★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 보장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킬 기회를 가지기 위해 자신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학습을 할 권리와 학습 내용을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등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학교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 정규 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학생들의 참여를 안내할 수 있으나,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1년 후 어느날 밤. 빛나는고등학교





나래의 방 안. 컴퓨터를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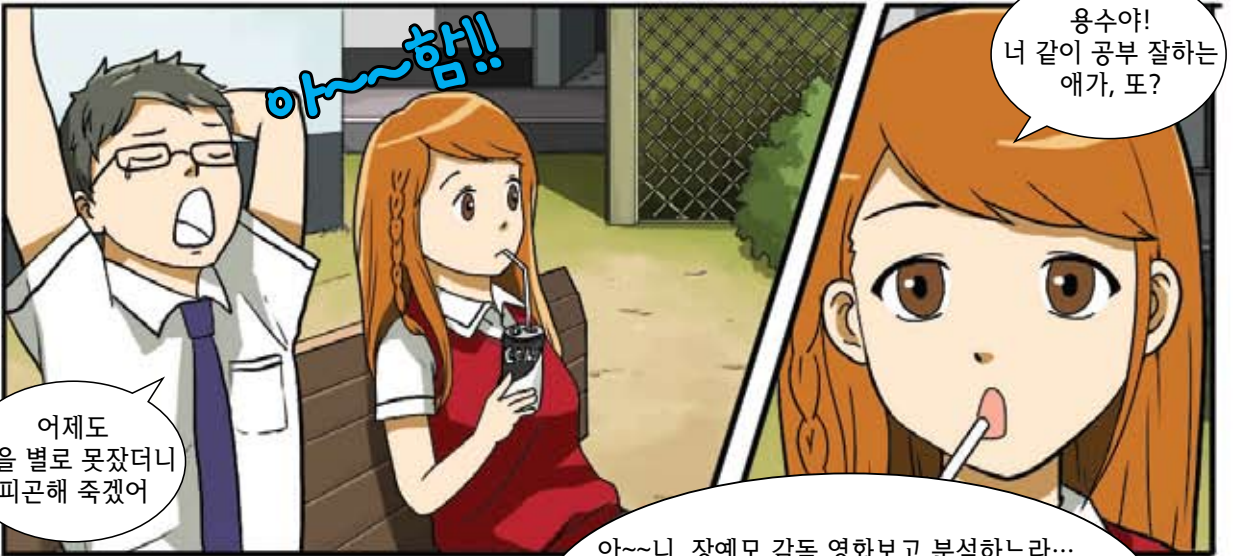
어?
이게 뭐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조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킬 기회를 가지기 위해 자신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학습을 할 권리와 학습내용을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 정규 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학생들의 참여를 안내할 수 있으나,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라고?
이런 게 있었어?



어제도
잠을 별로 못잤더니
피곤해 죽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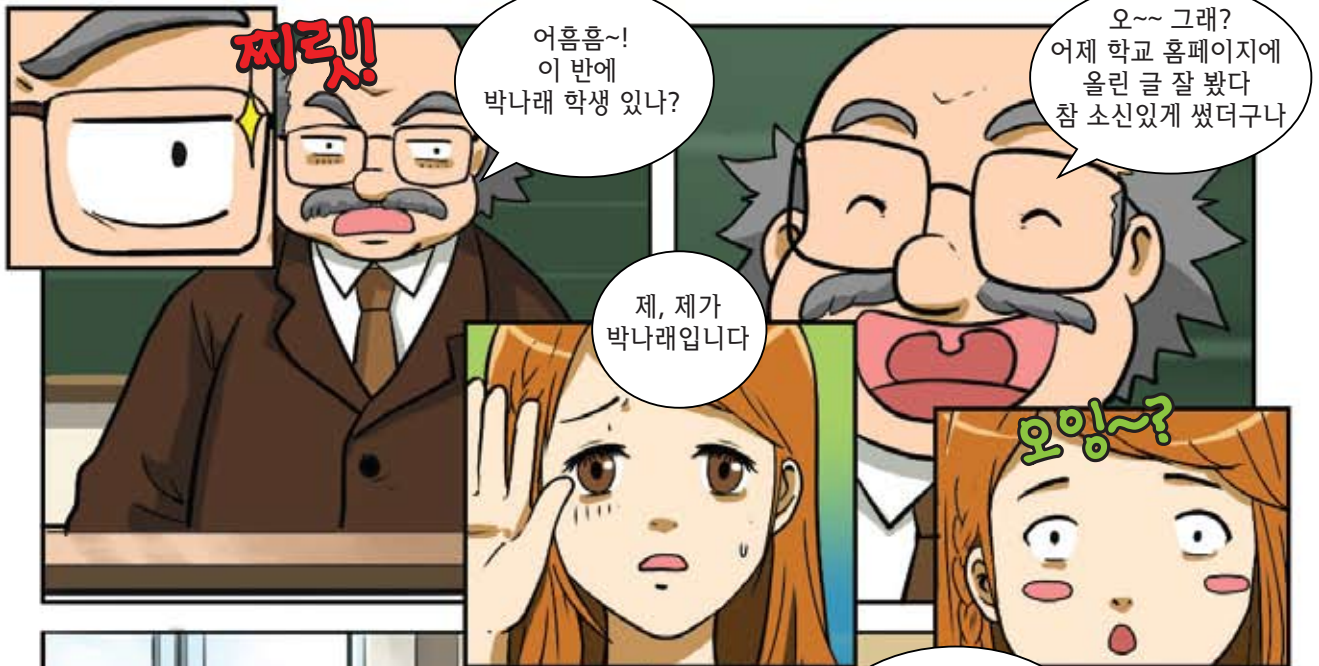


참~ 어제
학생인권조례란 걸 봤어
우리에게도
자율적인 학습권이
보장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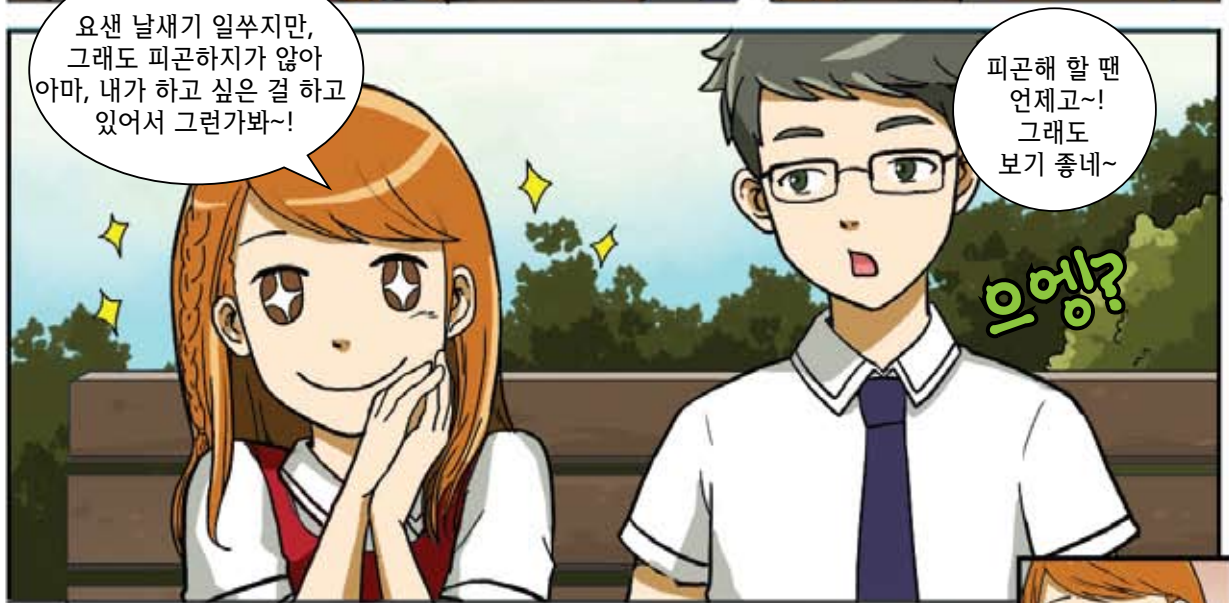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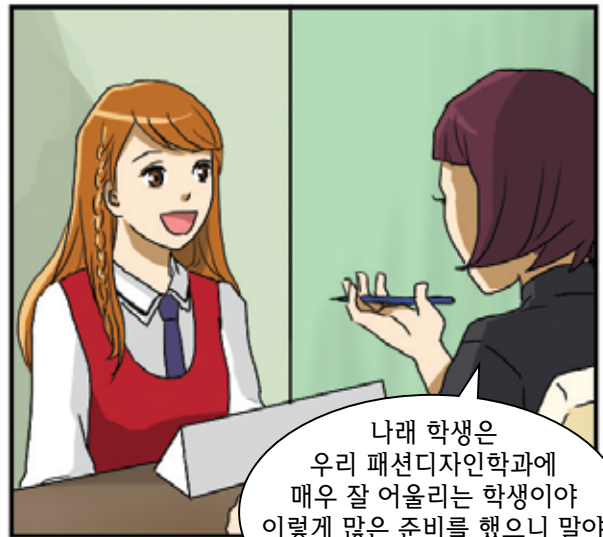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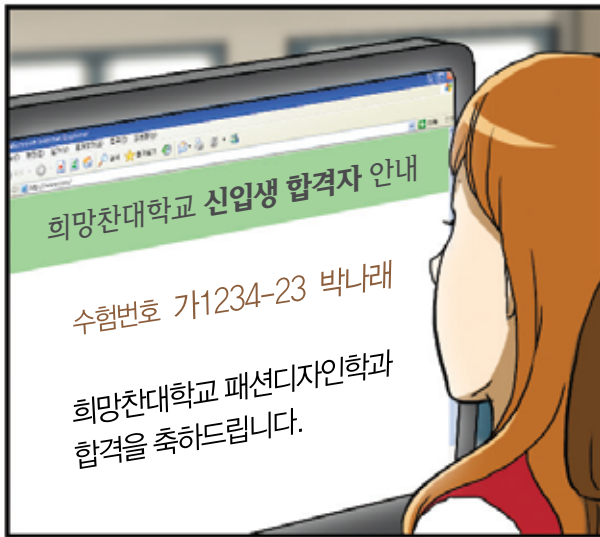
으응~
그래서
어제 내가...

속닥속닥~











제9조 학생인권 보장의 원칙

1.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학습할 권리

1.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학교는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5. 교육감은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교에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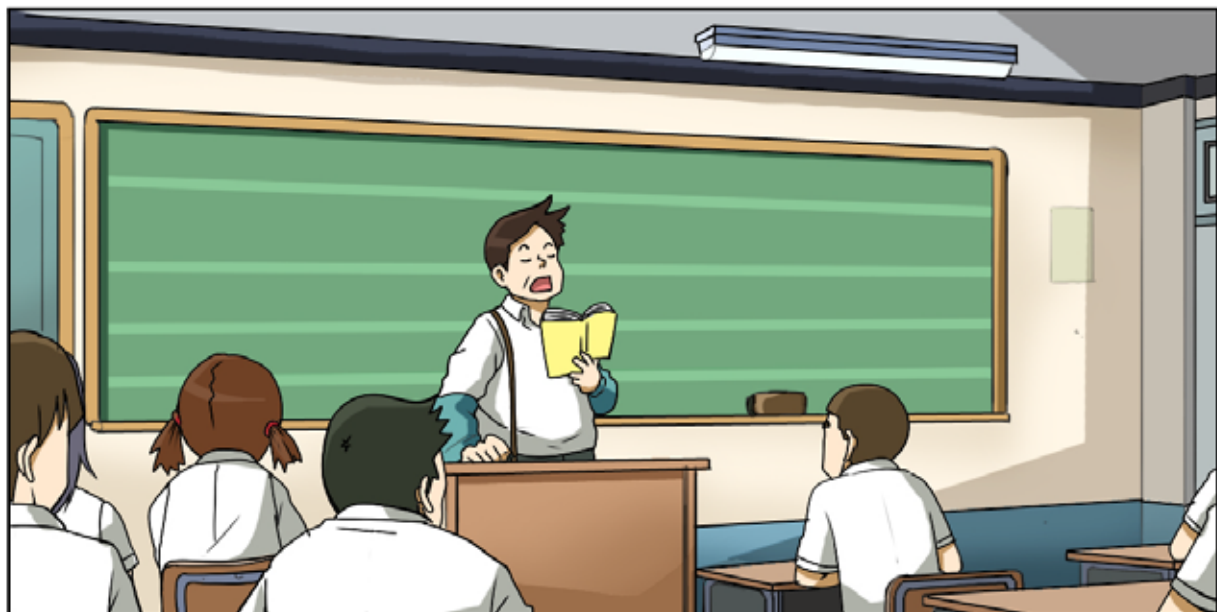
선생님, 우리 친구해요

★ 소통과 참여의 학교운영 실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언론활동,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 조사, 서명운동, 모임 결성 등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폭력적인 의사표현이나 모임 결성 등은 법률과 학교의 규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헤헤~

선생님~
댓글 봤어요!
언제 이런 걸
다... 정말
짱이에요



어흠흠!!

선생님~
팔로워 할래요!
헤헤~~

그 후로 우린
마재철 선생님과
SNS친구가 되어
학교생활이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참!! 마장추(마재철 선생님
장가 보내기 추진위원회)
하기로 해놓곤 답이 없으신
우리 산적 같은
마.재.철 선생님!
프로필 사진 좀 제발
바꾸자고요, 예? 헤헤~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단, 모두가 만든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죠.

학교, 선생님,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면

소통과 참여의 학교 운영이

실현된답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14조



제12조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6.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제14조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은 제15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3.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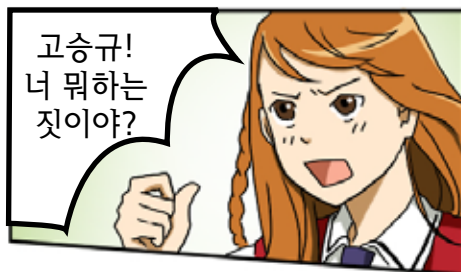
4.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현이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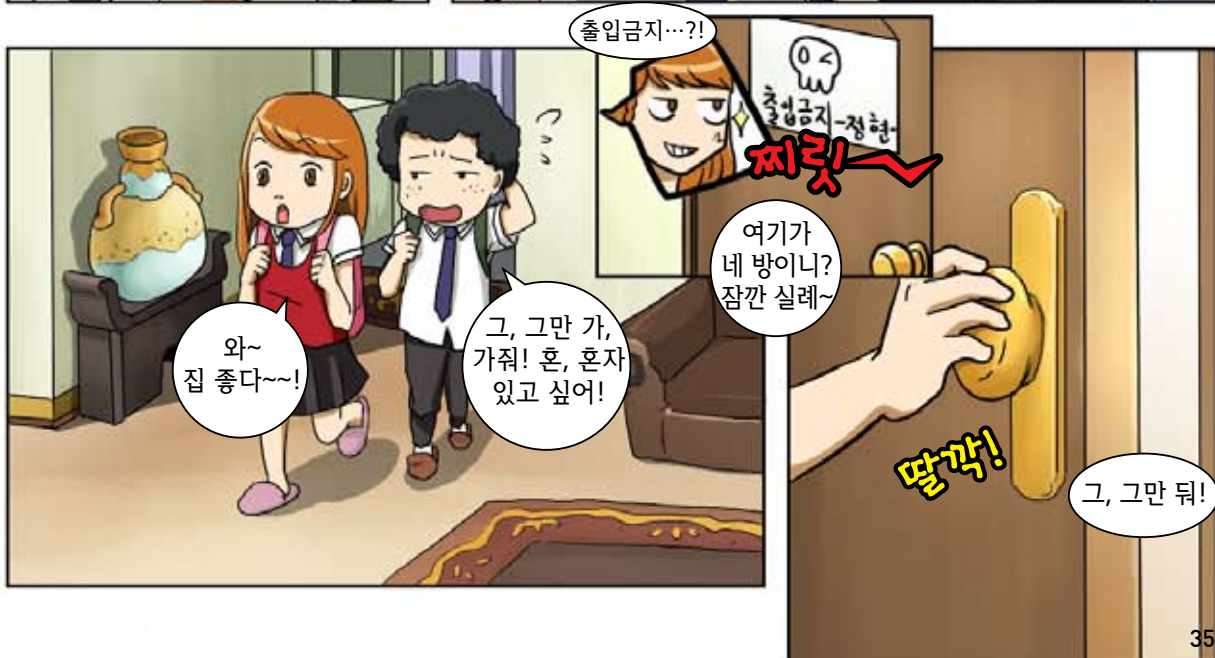
★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장애, 빈곤,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는 돌봄과 배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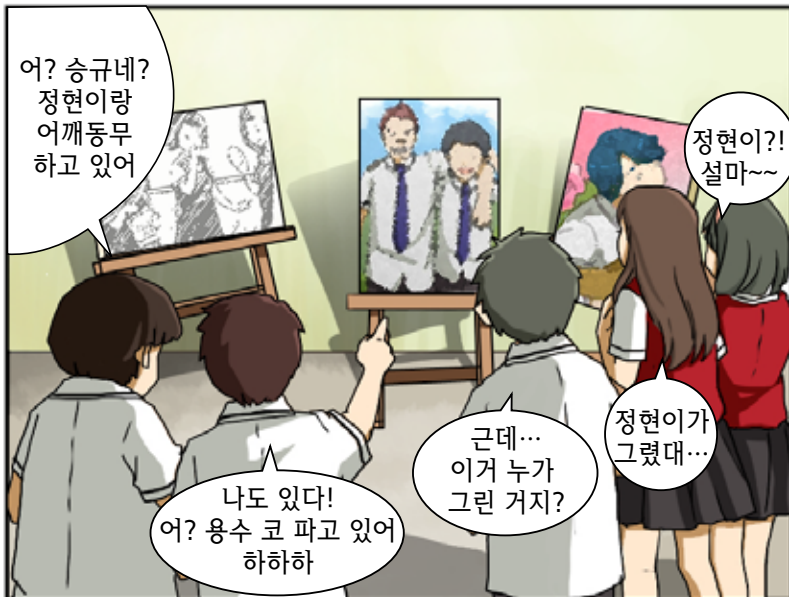




월요일 아침
빛나는고등학교
등교시간



어? 승규네?
정현이랑
어깨동무
하고 있어



정현이?!
설마~~

정현이가
그렸대...

근데...
이거 누가
그린 거지?

나도 있다!
어? 용수 코 파고 있어
하하하

자~~ 주목!!
여기 전시된 그림은
전부 정현이가 그린 거다
훌륭한 작품들이길래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천천히 감상해
보도록!



야 이정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응? 왜 하필 나만
코를 파고 있냐고~~
아호~ 창피해~~
전교생이 다 봤어~
어쩔거야, 어쩔거야~~



으, 응...
그, 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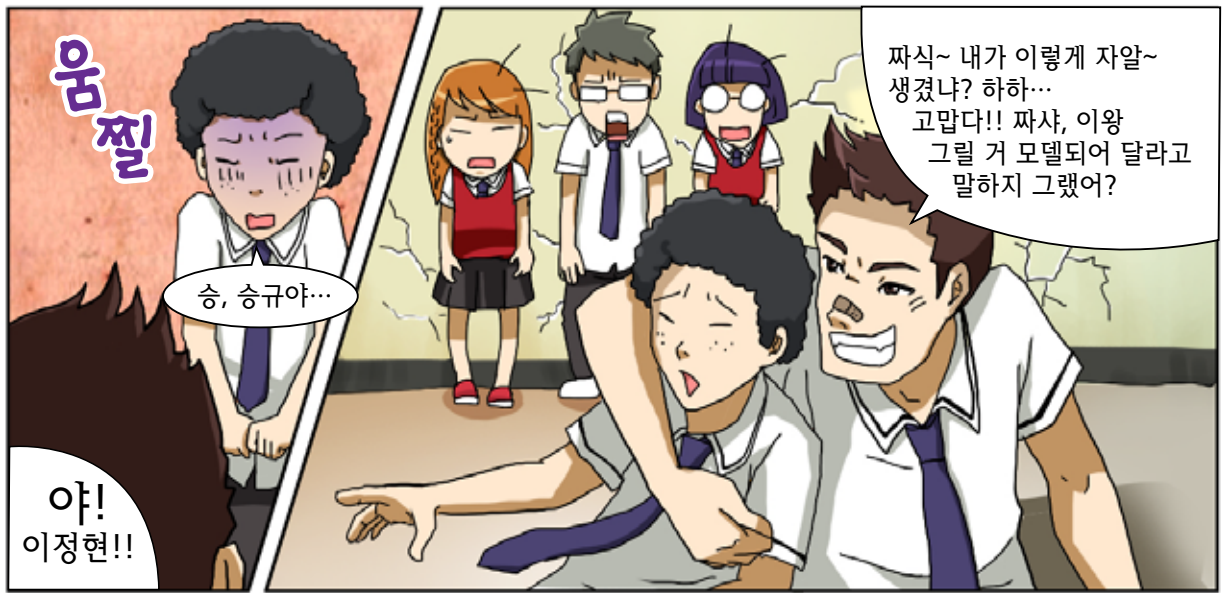


뭐어?

내가 그대로
가자고 했어
너 원래
저렇잖아

메~~롱!

박나라!!
너 거기 안서?!





제11조 신체의 자유

1.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
3. 학교에서는 교육적 목적의 활동을 제외한 강제 노동은 금지된다.

제19조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7. 교육감과 학교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치유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도 사생활이 있거든요

★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인 기록물, 사적인 공간과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과 선생님,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적인 검사는 금지됩니다.







맨날 너랑
같이 다니니깐
그런 오해만 생기잖아
이젠 혼자 갈테니까
너도 혼자 가!!

같이 가~

나래야
그래도 밤엔
위험해~

용수와 같이 가고 싶지 않았다.
후문이 어둡긴 했지만,
괜히 오해사고 싶지도 않고...
나래의 기분은 그보다 더
어두워 있었다.

그래도
혼자 가면
어떻게 해~

용수랑
같이 갈걸~
무서워~~

괜,괜찮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야...

날이 유독 어둡구만!
녀석들 반성문 쓰고
잘 들어갔을까?

박나래

띠리링~

아까 나래 번호를
저장해 두길 잘했네
전화좀 해봐야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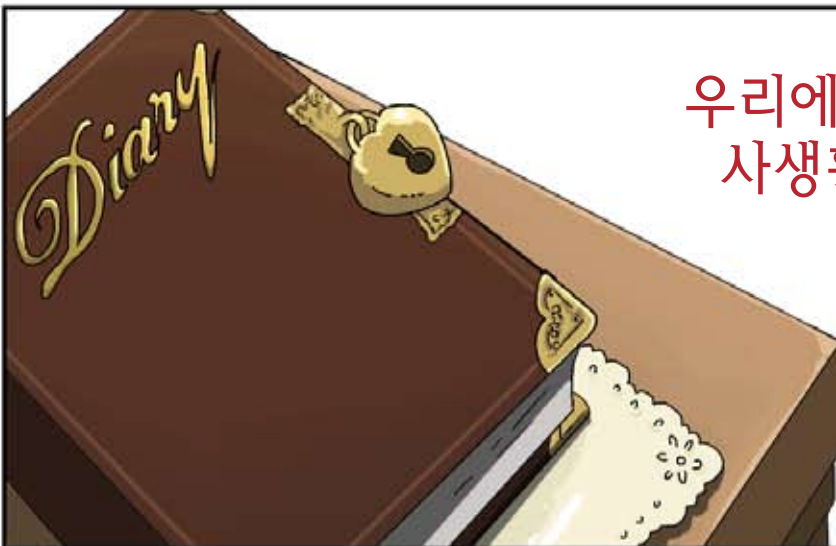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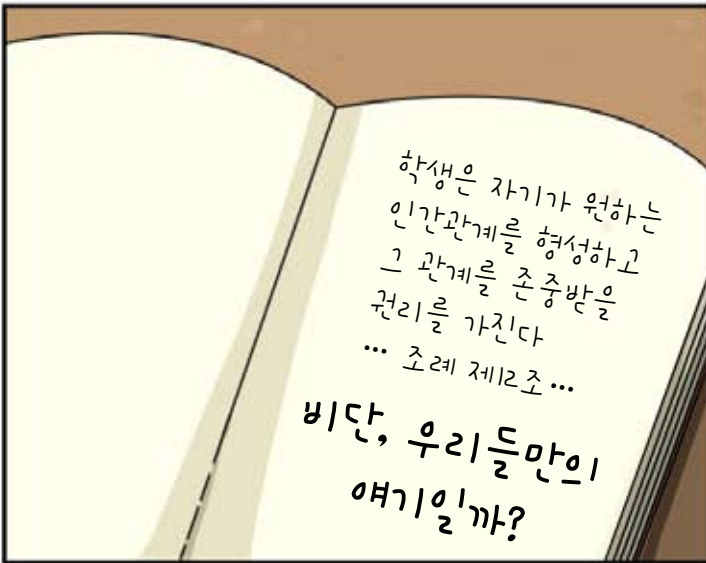


왜냐고? 내가 아끼는 너희들이
다칠까 두려워서다!
너희들은 친구이고, 그게 우정이며
나아가 순수한 사랑일지 모르지만
어른이 되기 전까지 너희에겐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도
사생활이 있거든요

광주광역시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13조



제12조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1.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4.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5. 교직원원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6.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7.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운용하여야 한다.
8. 학교의 장은 학교 재산 보호 및 학생·교직원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1.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규리, 학생자치의 의미를 깨닫다

★ 학생자치활동 보장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입니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자신에게 적용될 규범인 학교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학교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학생인권을 실현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학생회, 동아리 등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자치 기구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구

그렇다고 학생회 임원을
놓칠 순 없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대학갈 때 가산점 붙을 거고,
졸업식날 공로상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내 시간을 전부 학생회 일에
활애하는 건 시간낭비야
아~ 어찌지?



위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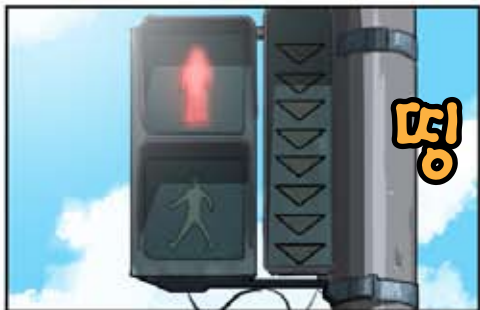
신호등이
곧 바뀔 텐데...
할머니가 위험해



어휴~
날이 갈수록
고되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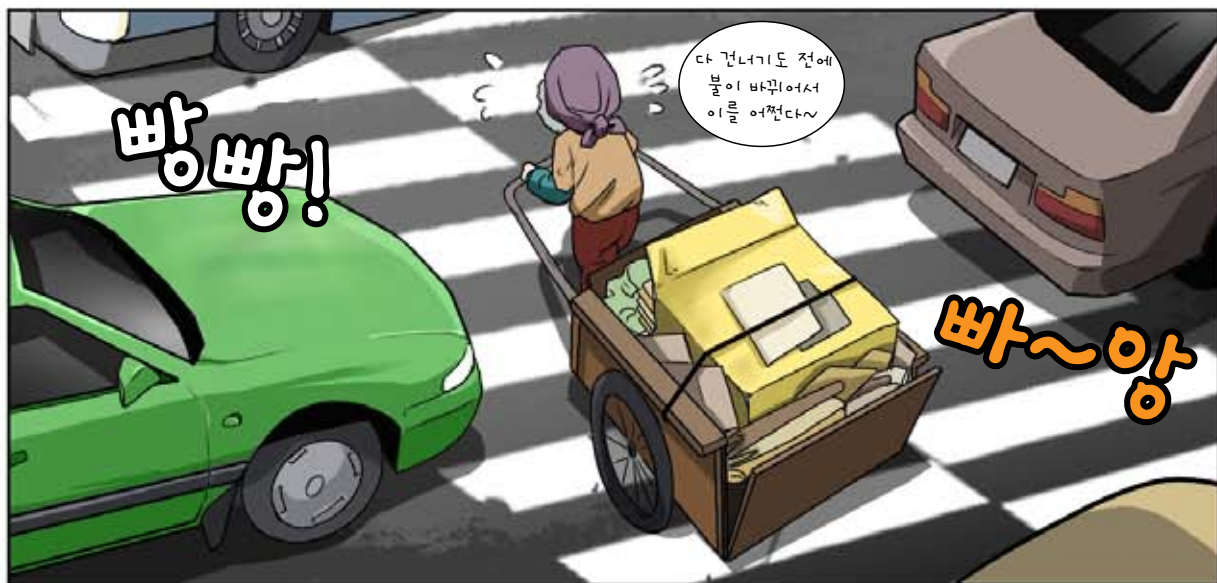
**삐비비빅
삐비비빅**



땡



빠 빵~~





다음 날 아침



맞아~ 학생회에선
대의원회의를
거쳐서 나온 내용을
수렴해서



선생님과 의견을
나누지



다른 학생들에게 학생회 홍보도
하지만 아침방송을 통해
여러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 했던
점이나 학교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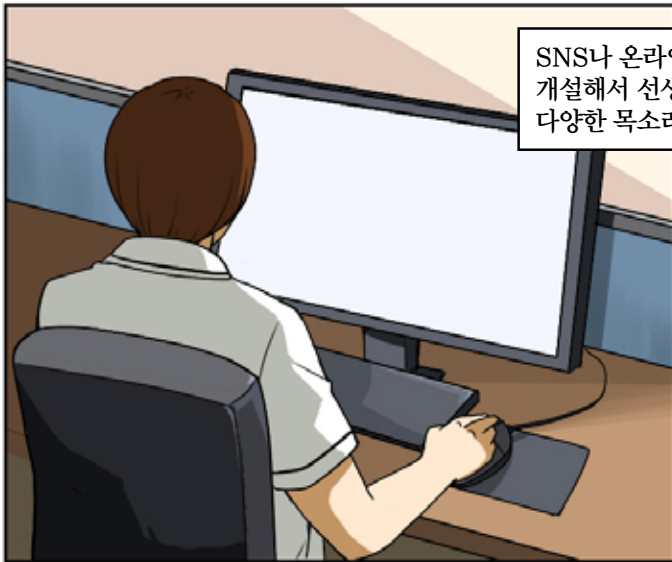


참! 우리들만의 축제를
빼놓을 순 없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짜고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같은 활동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생님, 학교와 의논하지





SNS나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



그 모든 걸 하려면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발로 뛰고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야 모두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잖아

역시
회장은 달라~



참... 많이 부끄러워
그동안 난 내가 왜
내 시간을 쪼개서
이 학생회를 하는지,
불평 불만만 가득했거든
창피하다~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지마~
나도 참엔 그랬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잖아



어! 그래?
뭐든지 맡겨만 주라고~
이 규리님이 확실하게
딱딱 밀어줄 테니까~
하하하하!!

으~
저건 오버야~



제15조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 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학교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6.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에 제29조에 따른 학생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9조 학생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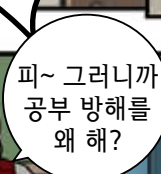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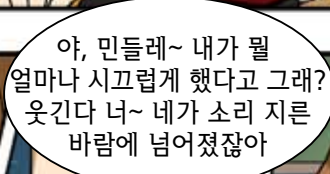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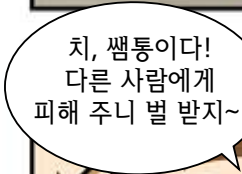
1.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①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학생인권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 ③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관련 정책 중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그밖에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권, 넌 뭐니?

★ 인권교육 활성화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에 관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해야 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 내 인권교육은 인권 일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학생인권, 소수자 인권의 구체적인 상황(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을 알아가도록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한편 교육청에서도 모든 자격연수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내용을 편성해야 하고 교직원 대상 일반 연수에 인권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뭐? 권리? 웃기시네~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이건 인권침해야!!!



난 쉬는 시간에
최대한 조용히 불렀어
나도 내 꿈을 펼칠 권리가 있어
너도 내 인권을 침해했다고!



왜 이리
소란스러워!
종 울렸으면
수업할 준비를 해야지
떠들고 싸움질을 해?



흥~!

찬우
네가
참아~



대체 뭇뻔에
이 난리가 난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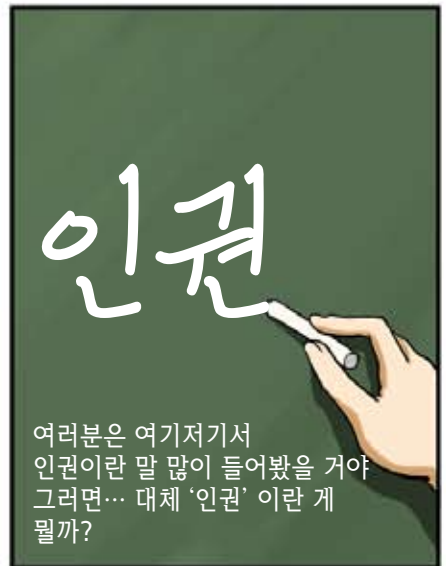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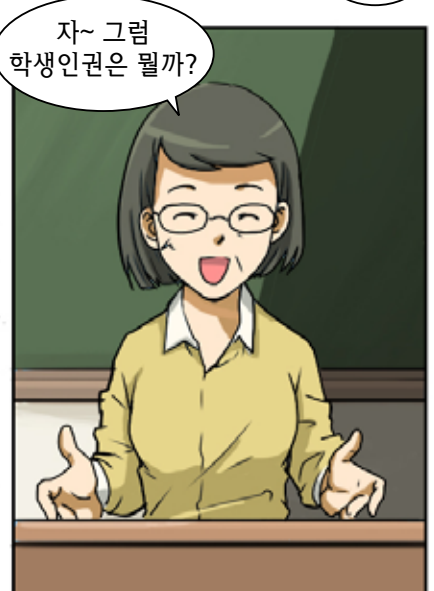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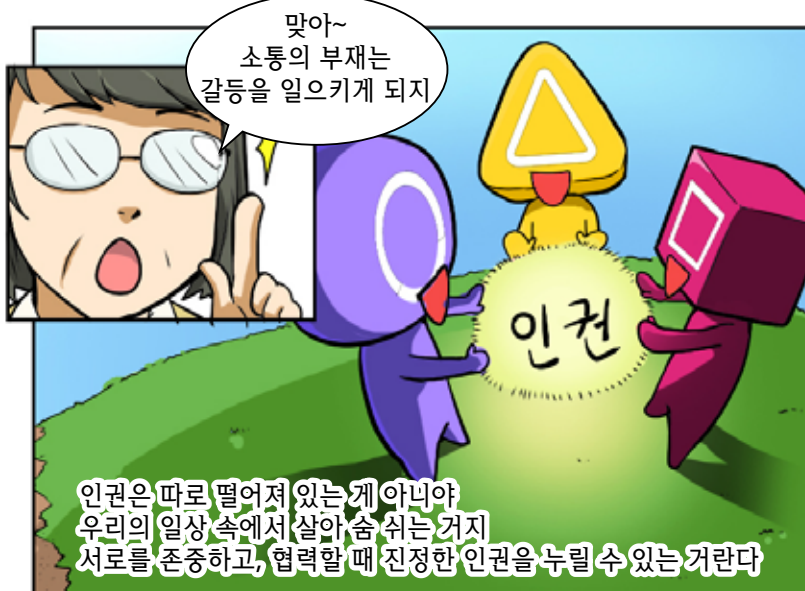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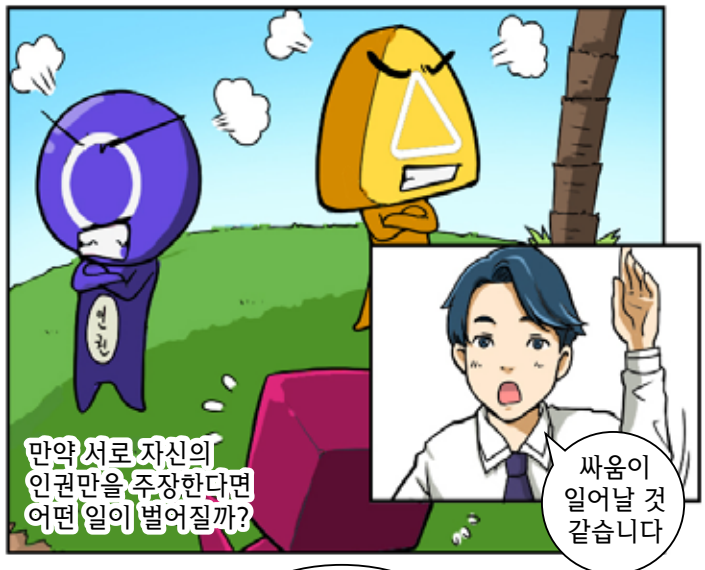
아무리 쉬는
시간이라도 그렇지
찬우가 시끄럽게
노래 불렀어요
공부하는 저에겐
엄연히 인권침해
라고요!

수업 시간도 아니고
쉬는 시간은
자유 시간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짹짹
소리 지르면서
노래한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을 들레에게만
맞추는 것도 엄연한
인권침해라 생각해요~!



흠... 인권이라...









하하, 김선생~
지나가다가 좋은 얘기가
흘러나오기에 내 심취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교장선생님
어떤일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교장선생님



여러분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선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려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인권 동아리도 만들고
인권에 대한 다양한 토론대회를 열어볼까 해요



교장선생님~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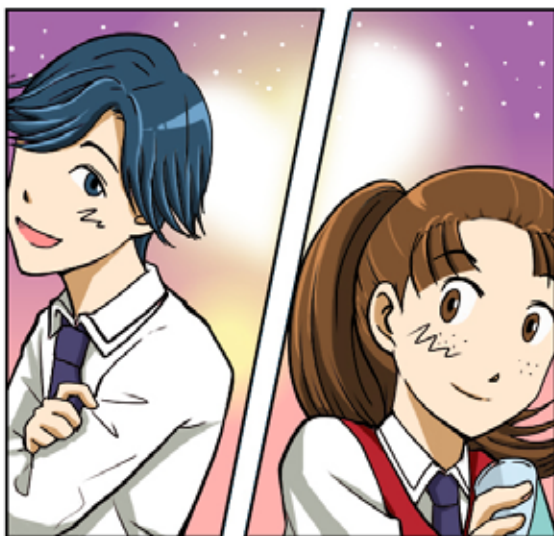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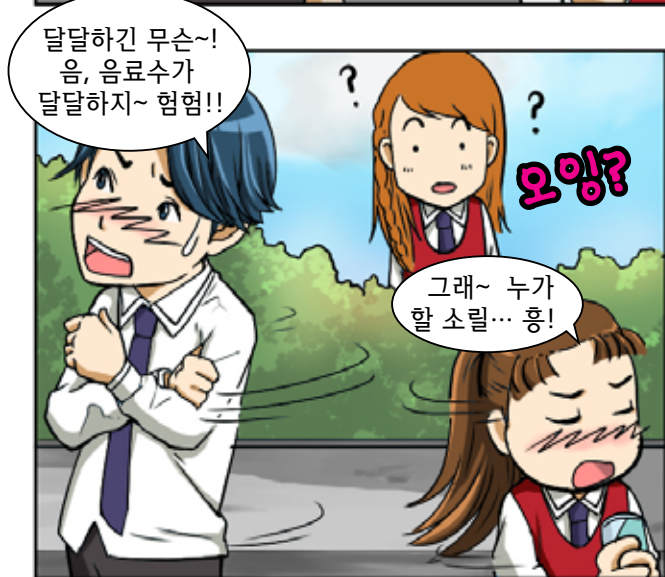
그렇지~!
학생이 빠진 인권을
학생인권이라
부르진 않겠죠?



학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굼적굼적~







제34조 인권교육 지원

1. 교육감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35조 학교 내 인권교육 및 연수

1.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에 관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 교직원에 대한 연수

1.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인 모든 자격연수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연수에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 보호자 교육

1.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의 권리는 소중해!

★ 인권지킴이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모든 욕구를 보장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저희가 할 일을 적어보긴 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이래도 되나~싫기도 해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인권에 대해 얘기했었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예, 기억나요
좀 어렵긴 했지만
유익한
수업이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인권에 대해,
또 학생으로서 학생 인권에 대해
얘기하고 알릴 필요가 있겠지?
너희들 스스로 말야~!



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 동아리가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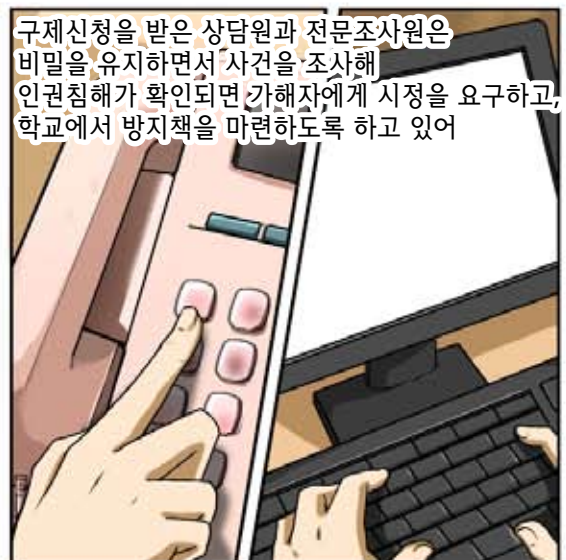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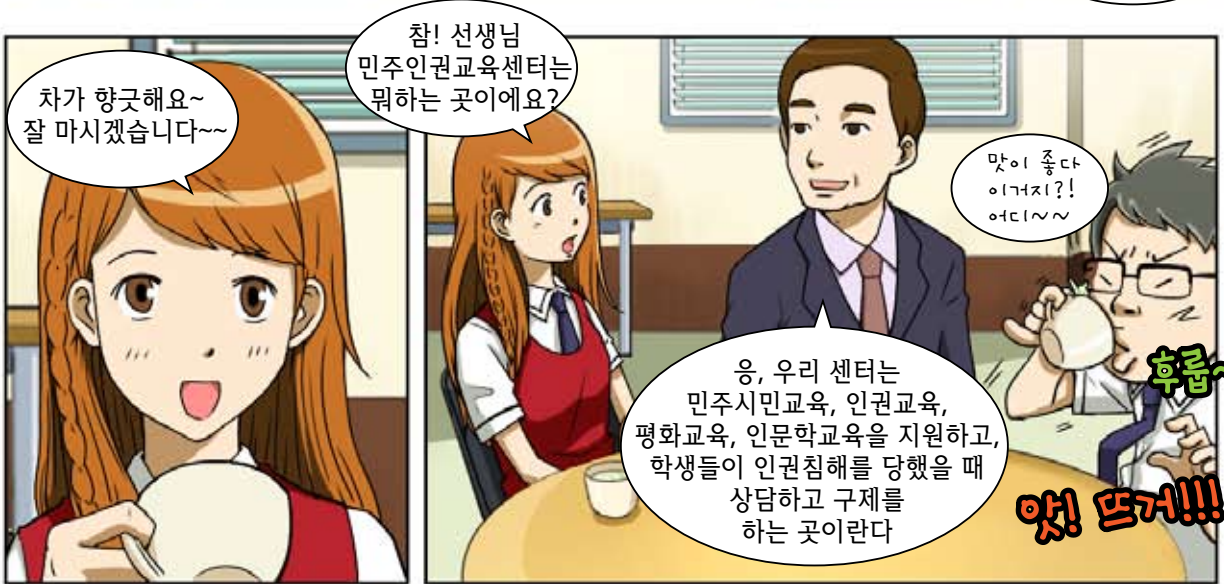
이왕이면 학생 인권에 대해
권리와 그에 대한 책임도
두루 생각해보도록~!

우선 인권이
무엇인지
알려야 겠어요~

그래, 규리야~
네가 글씨를 잘 쓰니까
예쁘게 POP좀 써 봐~!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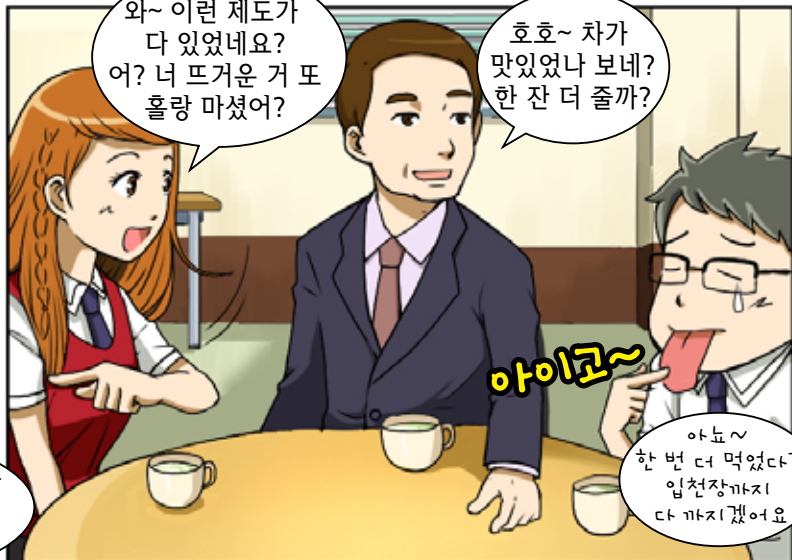




시정이 되지 않거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보고해 교육감의 직접 시정을 명령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야



그럼, 너희들이 인권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이러한 사항도 같이 홍보하면 더 좋겠지?



와~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어? 너 뜨거운 거 또 흘랑 마셨어?

호호~ 차가 맛있었나 보네?
한 잔 더 줄까?

아이고~

아뇨~ 한 번 더 먹었다간 입천장까지 다 까지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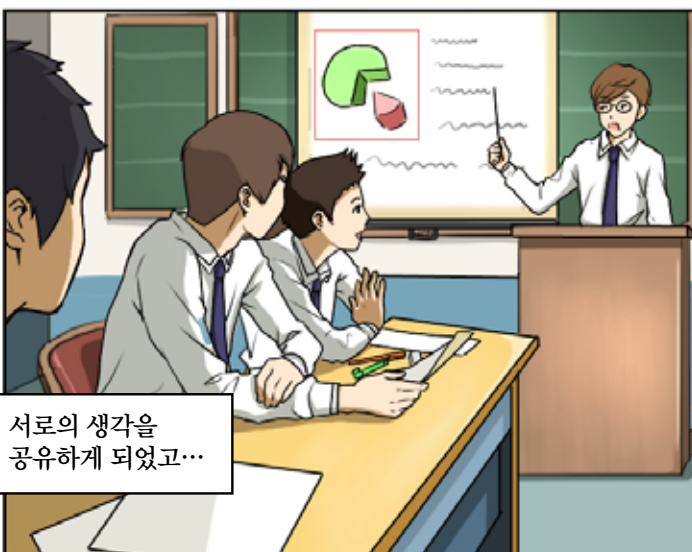
김선생님과 교육센터 선생님의 말씀을 모아서, 동아리의 의의와 홍보활동에 대해 알렸다 그 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동아리에 들어왔다



쓱쓱

쓱쓱~

토의를 거쳐 인권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었다 손으로 그리느라 쥐가 다 났지만 그 덕분일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고...



토론대회도 열었다!



교장선생님은 소정의
상금을 거셨다!

토론대회에 나온 의견 중에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자는 의견이 분분했다
우린 선생님과 학교 측에 말씀드리고
UCC 공모전도 개최하게 되었다



용수가 제일 기뻐하며
캠코터를 들고 아이들에게
액션~을 외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바빠 죽겠는데 용수는 내게
연기까지 시켰다

나래야~
발연기 그만하자
오그라든다~

이런 좋은 활동은
우리 학교에서만 아니라
널리 알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는 현수막도 걸고...



어깨띠를 두르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설명도 하고
길거리 홍보도 했다



도움이
되어서 기뻐요
헤헤~!

봉사활동도 하고...

외로웠던 아이들과는
축구를 하며 서로 마음을
열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인권이란
무엇인지도
말해줬지만...
아직은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제22조 청원할 권리

1.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청원을 제4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민주인권교육센터

1.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민주·인권·평화교육의 시행 및 지원
 - ② 민주·인권·평화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 ③ 학생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
 - ④ 학생의회 지원
 - ⑤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센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며, 제2항 제3호와 관련해서는 전문 조사원과 상담원 등을 둔다.
4. 그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전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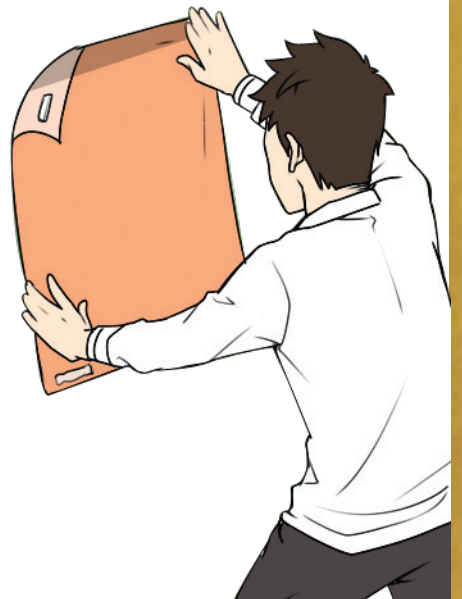
1. 센터는 제38조 제2항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 역할로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회는 3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생인권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 ①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② 교육 및 법률 전문가

제40조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

1. 센터는 학생이 인권 침해해 대하여 상담하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락·통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센터에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센터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침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 후에 전문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교육감은 제3항의 보고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5.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제41조 학생인권 침해의 조사

1. 센터는 제38조 제3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제40조 제2항의 구제신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3.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 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 방문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다시 겨울,
빛나는고등학교 졸업식



입학식 땐 어렵고 지루했던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
이젠 점점 그리워 질 것 같아

공모전에서 상도 타고...

정현이도 이젠 수다쟁이가 다 됐어~
승규랑 게임도 같이 하고 다니고~
그땐 수줍어 고개도 못 들더니...

그렇게 양숙이던 들레와 찬우는
이제 절친이 됐는지, 아마?

학생회에 열심히던
규리는 대학에 가면
학생회장에 도전한다던데,
규리아 넌 반드시 될 거야

팟~! 최신행 휴대폰을
신처럼 모시던 용수 덕(?)에
마재철 선생님과 SNS 친구도 되고...

아~! 권혁 선생님!!
이젠 권혁 교감선생님이지?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느껴져~



우린 참 행복했어

꿈을 펼칠 수 있었고...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창시절이었으니까...



행복은 꿈꾸는 인간

퍼낸날 2012년 10월 05일

퍼낸곳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생활과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human.gen.go.kr>

전화 062-718-1312

팩스 062-718-1317

만든곳 데코디자인그룹

신재현 민재상 정민규 임지혜 이승환 김수진

홈페이지 www.decodesign.co.kr

전화 062-226-6602~3

팩스 062-266-3603

출판등록 2007년 5월 17일 제359-2007-000033호

<비매품>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